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8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입국장 인도장 설치 단서 규정 삭제	3

I. 개요

1.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명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입국장 인도장 설치 단서 규정 삭제

현 행	개정안
☐ 보세판매장(\$196) ☐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 조건 -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 공항 및 항만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 판매 가능	☐ 입국장 인도장 등의 설치 단서 규정 삭제 ☐ 입국장 인도장 등의 설치 단서 규정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황명선의원안 2025. 12. 10. 제출(의안번호 15087)

☐ 개정안은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보세판매장은 ‘물품을 보세상태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함. 보세판매점은 공항 출국장의 면세점이 대표적이고, 시내 주요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도 일부 설치될 수 있음.

정부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세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¹⁾ 이후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

1) 「관세법」

장'2)을 통한 면세품의 판매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음.³⁾ 이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음.

2026년 1월 기준 「관세법」 제196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보세 판매장은 외교관 면세점 1개, 공항에 설치되는 출국장 면세점 22개, 시내면세점 12개, 입국장면세점 7개 등 42개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⁴⁾에 따라 제주도여행객은 제

제196조(보세판매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

3)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 등)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2026년 1월 기준 제주 지정면세점은 공항면세점 1개, 항만면세점 2개, 시내면세점 2개 등 총 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 외에도 근거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기 및 선박 내(기내판매점)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면세점 운영 현황]

구분		법적근거	운영현황
보세 판매장 (42)	출국장(22)	「관세법」 제196조	• 공항(19): 인천 11, 김포 2, 김해 2, 제주 1, 청주 1, 대구 1, 무안 1
	시내(12)		• 항만(3): 부산(1), 평택(1), 군산(1)
	입국장(7)		• 서울 7, 부산 2, 제주 2, 대구 1
	외교관(1)		• 공항 7: 인천 2, 김포 1, 김해 2, 대구 1, 무안 1
제주 지정면세점(5)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13	○ 공항: JDC 제주공항점 ○ 항만: JDC 제주항 1점, 2점 ○ 시내: JTO(국제컨벤션센터), JTO(성산포항)

주: 2026년 1월 기준

자료: 관세청

□ 개정안은 이에 입국장 인도장이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하기 위해 그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하여 그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국장 면세점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현재 ‘입국장 인도장’ 외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어 동일한 입국 단계에서 면세품을 제공하는 수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기능 중복과 함께 사업자 선정·운영 구조상 유통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입국장 내에서 면세품에 대한 구매는 입국장 면세점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입국장 인도장 근거 규정 논의 과정에서 제도 도입이 특정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둘째, 입국장 인도장 근거 규정 삭제를 통해 통관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음. 입국장은 여행자·수하물·검역 등 통관 절차가 집중되는 구역으로, 인도 물품과 개인 휴대품의 혼재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 및 안전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통관 동선을 단순화하고 검사·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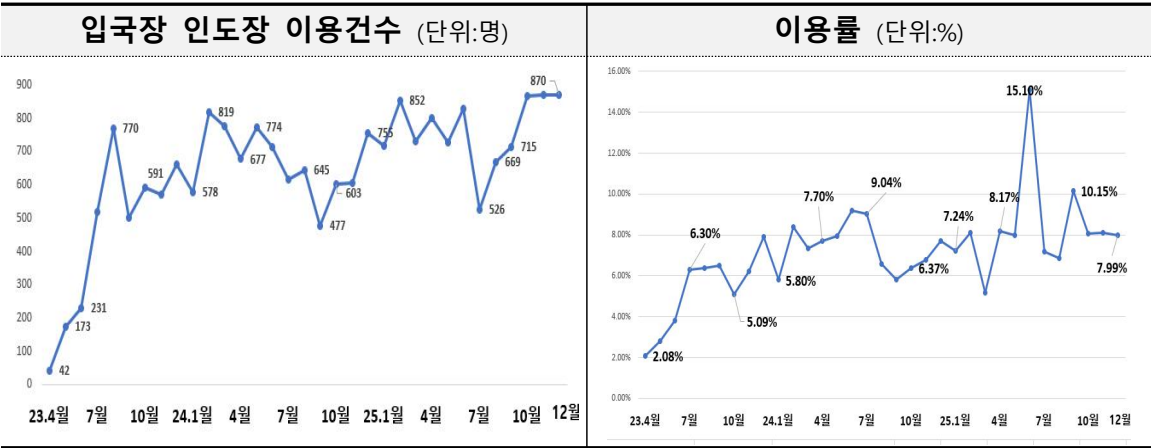
□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저희는 부동의인데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세관 검역기능을 보완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김광립 의원님 안의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하면 대기업의 독과점화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조세소위원회), 2018.11.28.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들어서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온라인 면세점을 찾는 소비자는 늘어나는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투데이신문,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대기업 면세점에 특혜”, 2022.10.17.

첫째, 입국장 인도장이 현재 운영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민간사업자가 시설·비용등을 투자하여 입국장 인도장의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국장 인도장 이용객 수 또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입국장 인도장의 법적 근거규정을 삭제할 경우, 면세 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입국장 인도장 이용건수 및 이용률]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면세점협회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면세품 인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입국장 인도장 관련 정부의 추진 계획 및 내수 확대를 위해 그 운영을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둘째,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공항 내 관광객의 편의가 저하될 수 있음. 소규모 공항의 경우 공간의 한계로 입국장 면세점이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워, 입국장 인도장만이 유일

6) 2024년 국정감사 이종욱의원

한 대체제이나, 관련 법적 근거를 삭제할 경우 관광객의 면세품 구매 관련 편의가 저하될 수 있음.

그 밖에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카타르의 경우 “Collect on Return”를 도입하여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에서 출국 후 귀국 시 구매 물품을 회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싱가포르의 경우 도착 수령 카운터(Arrival collection counter)를 지도상에 명시하여 자국민 면세품의 구매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158

7)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두바이의 Arrivals Click&Collect, 스위스 취리히 공항의 Reserve&Collect를 출국 또는 도착시 픽업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중임.